A.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

구 분	국토교통부고시 2020-212호(2020.2.20.)	<제2022-868호, 2022.12.28.> 이후 부터 적용 (現在 제2023-494호)
평가방법	KS F 2863-1 경량충격음: 역A특성가중규준화바닥충격음레벨 KS F 2863-2 중량충격음:역A특성가중바닥충격음레벨	KS F ISO 717-2 경량충격음: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KS F ISO 717-2 중량충격음: A특성 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
측정규격	KS F 2810-1 경량충격원: 태핑머신 KS F 2810-2 중량충격원: 뱅머신(타이어)	KS F ISO 16283-2 경량충격원: 태핑머신 KS F ISO 16283-2 중량충격원: 임팩트볼(고무공)
세대선정 및 측정위치	①측정세대: 평형별 3개세대 (중간층과 최상층의 측벽세대, 중간층의 중간세대) ②측정대상공간: 거실(living room) (거실과 침실 명확하지 않을시 가장 넓은 공간) ③측정위치: 중앙점포함 4개소 이상 마이크로폰 높이1.2m, 벽면에서 0.75m이격 (수음실 바닥면적이 14㎡ 미만 경우 0.5m이격)	①측정세대: 사업계획승인단지의 평면유형별(타입별) 세대수의 2퍼센트이상 선정하고 소수점이하에서 올림.(무작위추출 프로그램 이용, 5%까지 단계적 확대예정) ②측정대상공간: 거실 (거실과 침실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가장 넓은 공간) ③측정위치: 중앙점1개소와 벽면이격 4개소로 총5개소 마이크로폰 높이1.2m, 벽면에서 0.75m이격 (수음실 바닥면적이 14㎡ 미만 경우 0.5m이격) ④마이크로폰5개소 성능측정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⑤음원실 충격위치와 수음실 마이크로폰 위치 동일해야함
측정결과의 평가	산술평균 (동일공간에서 2이상의 시험기관 평가결과 차이가 3dB이하 경우 산술평균값을 최종 평가값으로 결정)	산술평균

구 분	국토교통부고시 2020-212호(2020.2.20.)		2022.8.4.이후	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
	※ 경량,중량충 정하지 않음 (경량충격음)	÷격음의 등급기준 다르고 등급간 3∼5dBi	※ 경량,중량충(경량충격음)	격음의 등급기준 동일하고 등급간4dB간격으로 일정함
	등급	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		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
	1급	L' _{n,AW} ≤ 43	1급	$L'_{nT,W} \leq 37$
	2급	$43 < L'_{n,AW} \le 48$	2급	$37 < L'_{nT,W} \leq 41$
	3급	48 < L' _{n,AW} ≤ 53	3급	$41 < L'_{nT,W} \le 45$
등급기준	4급	53 < L' _{n,AW} ≤ 58	4급	$45 < L'_{nT,W} \le 49$
	(중량충격음)		(중량충격음)	
	등급	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	등급	A특성 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
	1급	$L'_{i,Fmax,AW} \leq 40$	1급	$L'_{iA,Fmax} \leq 37$
	2급	$40 < L'_{i,Fmax,AW} \le 43$	2급	$37 < L'_{iA,Fmax} \leq 41$
	3급	$43 < L'_{i,Fmax,AW} \le 47$	3급	$41 < L'_{iA,Fmax} \le 45$
	4급	$47 < L'_{i,Fmax,AW} \le 50$	4급	$45 < L'_{iA,Fmax} \le 49$

B. 측정방법비교(경량)

구분	KS F 2810-1 경량충격원: 태핑머신	KS F ISO 16283-2 경량충격원: 태핑머신
측정방법	(1)측정주파수대역 1/1옥타브밴드: 125~2000Hz 5개대역 1/3옥타브밴드: 100~3150Hz 16개대역 (2)음압레벨 평균화시간 옥타브밴드측정: 250Hz이하는 3초이상, 500Hz이상은 2초이상 1/3옥타브밴드측정: 400Hz이하는 6초이상, 500Hz이상은 4초이상	(1)흑정주파수대역 1/1옥타브밴드: 사용안함 1/3옥타브밴드: 사용안함 1/3옥타브밴드: 100~3150Hz 16개대역 (2)음압훼뷀 평균화시간(고정마이크로폰 경우)[ISO7.7항] 100Hz~400Hz 6초이상, 500Hz~5000Hz 4초이상 저주파수대역 50Hz~80Hz 15초이상 (3)잔향시간 흑정횟수 3지점에서 각각2회하거나 6지점에서1회 (4)고정마이크로폰 경우 흑정횟수[ISO7.3.2항] ①마이크로폰 위치는 수음실 내부에서 최대로 허용되는 공간에 분산시켜야 하며 음원실과 수음실 경계편에 대해 동일한 평면안에 두 개의 마이크로폰을 위치시키거나 균일한 격자로 설치되지 않게 하여야 함. ②마이크로폰 위치 수는 경량증정원 가진 위치 수와 동일하거나 정수 배수가 되어야 함③4/개모는5개의 지점에서 경량증격원 가진경우 각 가진위치에서 경량증격유레벨을 두 번이상 흑정(6개이상 지점에서 경량증격원 가진 경우 각 가진위치에서 경량증격유레벨을 한 번이상 흑정(5)적절한 충격원과 마이크로폰 위치 예 [ISO 부속서F] ● 충격원 위치 × 고생 마이크로폰 이동하는 고정점 U 위층 방 - 방 경계 위층 방에 상대적인 아래층 방 경계 위층 방에 상대적인 아래층 방 경계 바라면적 한계

구분 KS F 2810-1 경량충격원: 태핑머신	KS F ISO 16283-2 경량충격원: 태핑머신
측정방법	(6)소형공간 대상공간의 체적이 25m² 이하인 경우 정량충격음레벨과 배정소음측정시 50.63.80Hz의 바닥충격음레벨 주정전차는 저주파수대역바닥충격음레벨(L _{LE}) 측정절차를 사용해야함.(ISO8형) ①실내모서리바닥충격음레벨(L _{LCorner}) 측정 및 모서리배정소음 측정 2 2 2 4 2 4 2 4 2 4 4 2 4 4 2 4 2 4 4 2 4 6 3 4 7 6 6 6 6 6 6 6 6 6 7 7 7 8 7 8 8 7 8 8 7 8 8 8 8

C. 산출방법비교(경량)

구분	KS F 2810-1 경량충격원: 태핑머신	KS F ISO 16283-2 경량충격원: 태핑머신
산출방법	 (1) 실내평균음압레벨산출(L) = 바닥충격음레벨(Li) L=10 log (1/n) ∑_{j=1} 10^{Lj/10}) 여기에서 L_j: j번째 측정점의 음압 레벨 n: 측정점의 수 (2)배경소음보정 (3) 규준화바닥충격음레벨(L'n) L'n = Li + 10 log A/A₀ 여기에서 A₀ = 10 m²이다. 	(1)실내(에너지)평균 바닥 충격음레벨(L_i) [ISO7.8.1항] $L_i = 10\log\left(\frac{1}{n}\sum_{j=1}^n 10^{L_j/10}\right)$ 여기서, L_1, L_2, \ldots, L_n : n개의 다른 마이크로폰 위치의 음압 레벨 (2)배경소음보정[ISO9.2항] $L = 10lg(10^{L_5b/10} - 10^{L_b/10})$ 여기서 L : 보정된 신호 레벨 (dB(데시벨)) L_5b : 배경 소음이 포함된 음압 레벨 L_6 : 배경 소음 레벨 (dB(데시벨)) (3)충격원 위치별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[ISO3.13항] $L_{nT}' = L_i - 10log\frac{T}{T_0}$ 여기서 T : 수음실의 잔향시간 (s) T_0 : 기준 잔향시간; 거주환경의 경우, $T_0 = 0.5$ s (4)충격원 전체에 대한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[ISO7.3.3항 식7] $L_{nT}' = 10log\left(\frac{1}{m}\sum_{j=1}^m 10^{L_{nT,j}/10}\right)$ 여기서 m : 표준 경량 충격원 위치 수 $L_{nT,j}'$: 표준 경량 충격원 위치 j에 대한 표준화 바닥 충격음 레벨

D. 측정방법비교(중량)

구분	KS F 2810-2 중량충격원: 뱅머신(타이어)	KS F ISO 16283-2 중량충격원: 임팩트볼(고무공)
산출방법	(1)최대음압레벨 측정 (2)배경소음보정 (3)바닥충격음레벨 ($L_{i,Fmax}$): 아래식으로 구한 가진점마다의 최대음압레벨의 에너지 평균값 ($L_{Fmax,K}$)을 산술평균하여 주파수대역별 바닥충격음레벨로 한다. $L_{Fmax,k}=10\log_{10}\left(\frac{1}{m}\sum_{j=1}^{m}10^{-4Fmax,j}10\right)$ 여기에서 $L_{Fmax,j}:j$ 번째 측정점에서의 최대 음압 레벨의 측정값(dB) m : 측정점의 수	(1) 충격원위치별 에너지평균최대바닥충격음레벨[ISO7.8.3항] $L_{i,Fmax,j} = 10 \log \left(\frac{1}{n} \sum_{k=1}^{n} 10^{L_{i,Fmax,j,k}/10} \right)$ 여기서 $L_{i,Fmax,j,1}$, $L_{i,Fmax,j,2}$, $L_{i,Fmax,j,n}$ 는 고무공 충격원 가진 위치 j 에 대한 수음실의 수음위치 n 곳의 서로 다른 마이크로폰 위치들에 있는 최대 바닥음 레벨 $(2) \text{배경소음보정[ISO9항]}$ 경량충격음과 동일 방법 배경소음의 평균화시간은 [ISO7.7항 고정마이크로폰의 음압레벨측정]과 동일함 $(3) $ 충격원전체의 에너지평균최대바닥충격음레벨[ISO7.3.4항] $L_{i,Fmax} = 10 \log \left(\frac{1}{m} \sum_{j=1}^{m} 10^{L_{i,Fmax,j}/10} \right)$ 여기서 m : 고무공 충격원 위치 수 $L_{i,Fmax,j}$: 고무공 충격원 위치 j 에 대한 최대 바닥 충격음 레벨

E. 평가방법비교

(2)역A특성곡선 확정

기준곡선을 1dB간격으로 상하이동시켜 상회하는 데이터의 합계가 밴드

수x2dB(=8dB)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가능한낮게 위치한 기준곡선 확정

(3)확정된 기준곡선 500Hz 값이 중량충격음레벨 $(L'_{Fmax AW})$

구분 KS F 2863-1 경량충격음:역A특성가중규준화바닥충격음레벨 KS F ISO 717-2 경량충격음: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($L'_{n,TW}$) (1)바닥충격음 차단성능평가 기준곡선에 표준화바닥충격음레벸([,',,T) 플롯 (1)역A특성기준곡선에 주파수대역별 규준화바닥충격음레벨 (L'_{n}) 플롯 (5개대역 125Hz~2000Hz) 1/1 옥타브 대역 70 기준값 dB 500 60 65 60 평가방법 50 -1000 57 62 2000 2 000 49 (2)역A특성규준곡선 확정 125 250 500 1000 2000 기준곡선을 1dB간격으로 상하이동시켜 상회하는 데이터의 합계가 밴드 (2)기준곡선 확정[ISO4.3.1항] 수x2dB(=10dB)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낮게 위치한 기준곡선을 기준곡선을 1dB간격으로 상하이동시켜 상회하는 측정데이터의 합계가 밴드수 규준곡선으로 확정 x2dB(=32dB)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낮게 기준곡선을 확정 (3)확정된 규준곡선 500Hz 값이 경량충격음레벨(L'_{nAW}) (3)확정된 기준곡선 500Hz 값이 경량충격음레벨 $(L'_{n,TW})$ 구분 KS F 2863-2 중량충격음:역A특성가중바닥충격음레벨 KS F ISO 717-2 중량충격음: A-가중 최대바닥충격음레벨(L'A Fmax) (1)50Hz~630Hz 1/3옥타브대역별 에너지평균최대바닥충격음레벨(LiFmax) (1)역A특성기준곡선에 주파수대역별 바닥충격음레벨 (L'_{Emax}) 플롯 (2)A-가중 보정값 [ISO 부속서D] (4개대역 63Hz~500Hz) 50 Hz | 63 Hz | 80 Hz | 100 Hz | 125 Hz | 160 Hz | 200 Hz | 250 Hz | 315 Hz | 400 Hz | 500 Hz | 630 Hz 기준값 주파수 옥타브 A(dB) -30.3 -26.2 -22.4 -19.1 | -16.2 | -13.2 | -10.8 -8.7 -6.6-4.8 -3.2 -1.9대역 73 1/1 66 옥타브 A(dB) -26.2 -16.2-87 -32평가방법 대역 1000 57 (3)1/3옥타브 대역별 A-가중 보정후 데시벨 합이 중량충격음레벨($L'_{1A \; Fmax}$) 56 $X_{iA,Fmax} = 10 \lg \sum 10^{(X_{i,Fmax,j} + A_j)} 10^{(X_{i,Fmax,j} + A_j)}$

여기서 $X_{iA,Fmax}$: 정수 단위로 반올림한 $L'_{iA,Fmax}$

J : 1/3옥타브, 1/1옥타브 범위 표시하는 첨자

A; : A-가중 보정표(1/3 또는 1/1옥타브)